



제422회 국회(임시회)  
제1차 국방위원회

#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제도 근거 마련〉  
■ 김병주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5185호)

2025. 2.

국 방 위 원 회  
전 문 위 원 류 승 우

#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I . 제안경위 .....         | 1 |
| 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..... | 1 |
| III . 검토의견 .....       | 2 |

## 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 : 김병주의원 등 10인
2. 발의연월일 : 2024. 11. 1.
3. 회부연월일 : 2024. 11. 4.

## 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대체복무요원이 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60일 이내에서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대체복무요원이 연 60일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대체복무요원의 정상적인 치료 및 합리적인 복무관리가 곤란한 상황이며,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도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마찬가지로 분할복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대체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체복무요원의 의료 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22조의2 신설).

### Ⅲ. 검토의견

- 개정안은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에서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본인의 질병 치료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의2 신설).

#### [신·구조문대비표]

| 현행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신설> | <p>제22조의2(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)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복무중단기간은 통틀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만큼 추가하여 복무를 중단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분할복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|

□ 현행 법령상 대체복무요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<sup>1)</sup>이 아닌 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상의 청원휴가 제도<sup>2)</sup>를 활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청원휴가의 연간 사용일수 상한인 60일을 초과하는 병원 입원 진료가 요하는 질병·부상의 경우 입원 치료가 불가<sup>3)</sup>한 실정임.

#### <대체복무요원 청원휴가 사용 현황(공무 외 질병)>

| 사용일수   | 계   | '20년도 | '21년도 | '22년도 | '23년도 | '24년도 |
|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30~59일 | 46명 | -     | 2명    | 8명    | 22명   | 14명   |
| 60일    | 15명 | -     | 1명    | 7명    | 3명    | 4명    |

□ 개정안은 대체복무요원이 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에 필요한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장기의 경우 일정 기간(통틀어 2년내) 복무를 중단하고 질병·부상 치료 후 다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복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, 대체복무요원의 건강권을 보장하여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유도하고,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병역이행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임.

1)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: 치료에 필요한 기간만큼 공가 사용 가능

2)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2조(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등) ① 대체복무 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

2. 청원휴가

가. 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: 연 60일 이내

3)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외출을 활용한 외래 진료만 가능

## <역종별 공무 외 장기간 질병치료 관련 제도>

| 사회복무요원   | 현역병               | 전문연구요원  | 산업기능요원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분할 복무 가능 | 군 병원 내<br>장기치료 가능 | 질병휴직 가능 | 질병휴직 가능 |

## <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제도 관련 「병역법」 규정>

제31조의3(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)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다.

1.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

2. 가족의 간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3. 재난이나 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본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복무중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1.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통틀어 2년. 다만,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만큼 추가하여 복무를 중단할 수 있다.

2.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: 통틀어 6개월

③ 제1항에 따른 분할복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다만, 분할복무의 승인권자를 ‘복무기관의 장’이 아닌 ‘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’ 또는 ‘소속기관의 장’으로 하는 것이 분할복무 제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에 더욱 용이할 것으로 보임.<sup>4)</sup>

4) 「병역법」 제31조의3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승인권자는 지방병무청장임.

「병역법」 제31조의3 제31조의3(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)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다.

## 〈소관 중앙행정기관, 소속기관 및 복무기관의 장 비교〉

| 구 분        | 소관<br>중앙행정기관의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속기관의 장                    | 복무기관의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회<br>복무요원 | 병무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방병무청장                     |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<br>· 공공단체 또는<br>사회복지시설의 장 |
| 대체<br>복무요원 | 법무부장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방교정청장                     | 교도소·구치소의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역 할        | 복무관리 정책 수립 및<br>지휘·감독 총괄<br>* 소집통지·소집해제 등 | 현장 복무실태 점검 등<br>복무기관 지휘·감독 | 배치된 요원의 일선<br>복무관리                    |

문 의 처

02)6788-5307

- 
1.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
  2. 가족의 간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3. 재난이나 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본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